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

2024. 3. 27.

관계부처합동

순 서

| □. 금융지원 필요성1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Ⅱ. 중소기업·소상공인 금융지원 ······ 2 |
| 1.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2 |
| 2. 소상공인 이자경감(민생금융) 3 |
| 3. 재기 및 정상화 지원4 |
| Ⅲ. PF 사업장·건설사 금융지원 ······· 6 |
| 1. PF사업장 금융지원 강화(신규·추가지원) ······· 6 |
| 2.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 ······ 6 |

I. 금융지원 필요성

◇ 우리경제에서 중요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

1. 중소기업 · 소상공인

- □ **중기·소상공인**은 모든 산업과 시장에서 빠짐없이 활동하는 우리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
 - 기업수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*이 절대적이므로,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중기·소상공인의 활력제고가 매우 중요
 - * 우리나라 사업자 중 99%를 차지하며, 고용의 81% 이상을 책임
- □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비, 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영 어려움 지속
 - **소상공인**은 생활밀착 업종(음식업, 소매업 등)의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중 증가한 대출로 이자부담이 큰 상황
 -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하여 중견 기업으로의 성장과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 수요도 긴요

2. 부동산 PF 사업장

- □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원활한 지원이 필요
- □ 그동안 **높은 금리부담, 공사원가 상승** 등으로 **부동산 PF의** 사업성이 악화되고,
 - 건설사는 자재비·인건비 상승* 등 영업환경 어려움과 함께, 사업영위를 위해 필요한 유동성 조달에도 애로 지속
 - * 건설공사비지수(전년비, %): 194.0, 202.0, 2111.3, 2210.7, 233.7 (19~23: 약 32% 상승)

II. 중소기업·소상공인 금융지원

〈주요 방안〉

◇ 4차 민생토론회(1.17일) 이후 [●]자금공급-^②이자경감-^③재기지원 全분야에 걸쳐 중기·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·추진

1.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

- □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중기·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"맞춤형 자금지원 방안"을 신속히 집행
 - (중소기업) 정상기업부터 어려운기업까지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별로 필요한 자금 총 40.6조원 공급(4월부터 본격 집행)
 - 1) [성장지원: 2조원] '중소→중견기업'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확대(기업당 최대 100억원→500억원)하여 성장사다리 제공(5월)
 - 2) [신산업 지원: 21.3조원] 신산업진출 및 사업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%p이상 금리인하 등 우대조건의 자금 제공(5대 은행 5조원 → 4월 시행, 정책금융기관 16.3조원 → 기시행)
 - 3) [고금리·고물가 대응 지원: 12.3조원]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 정책자금 제공(기시행)
 - 4) [일시적 어려움 지원: 5조원] 매출하락 등 대출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은행권이 1년간 최대 2%p 금리 인하(4월 시행)
 -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규모도 계획대비 1조원 상향(27.5→28.5조원)
 - * 일시적 경영애로 등을 신속히 극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'특례보증'도 신설(0.3조원)

- (소상공인)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(0.04→0.07%,
 시행령 개정중)을 통해 확보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
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*('24.下)
 - * '24년중 소상공인 약 3.2만명에 1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 공급(22 → 23조원)
-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소진공 정책자금도 확대 공급*('23년 3조원 → '24년 3.7조원)
 - * 저신용 정책자금(0.4조원) 및 매출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(0.3조원) 지원 등

2. 소상공인 이자경감[민생금융]

- □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"자영업자·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방안"(1.17일 4차 민생토론회 발표)을 차질없이 추진
 - ① (은행권) 자체재원으로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.5조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* (1인당 최대 300만원)
 - * '23년도 납입이자 총 1.36조원은 지급완료(2.5~8일) 하였으며, '24년도 납입 이자분 총 0.14조원은 4월부터 지급할 예정
 - ② (중소금융업권) 정부 재정을 통해 중소금융업권 차주인 개인 사업자 약 40만명에 총 0.3조원 환급* (1인당 최대 150만원)
 - * 매 분기별로 직전 1년치 이자 환급(1분기는 3.29~4.5일중 지급 예정)
 - **③** (7%이상 고금리)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(9.5조원)의 대상과 혜택을 강화*('24.3월)하여 고금리 차주의 부담을 경감
 - * [대상] '22.5.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→ '23.5.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
 ** [혜택] 1년간 금리 최대 5.0%로 인하(기존대비 최대 △0.5%p 추가인하),
 보증료 0.7% 면제 → 총 △1.2%p 비용절감 효과
 - 추가로 소진공 대환대출 프로그램*을 신규 도입('24.2월)하여 중·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(0.5조원)
 - * 7% 이상 대출을 저금리(4.5%)·장기분할상환(10년)으로 전환(최대 5천만원)

3. 재기 및 정상화 지원

- □ 취약 소상공인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, 신용회복 등 재기지원 시스템 구축
 - 사출발기금 대상을 확대*(코로나피해 요건 폐지, '24.2월)하여 보다
 많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**('24.2월말 기준 3.4만명 지원)
 - * (기존) 코로나19 직접피해 소상공인·자영업자 → (변경) '20.4월~'23.11월중 사업 영위 ** 금리 감면, 원금감면(감면율 최대 60~90%), 장기·분할상환 전환(10~20년) 등
 - 또한,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하고 사전안내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('24년말)
 -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사면*(최대 31만, '24.3월~)에 더해 성실경영 재창업자**에 대한 불이익 정보(예: 회생·파산정보) 금융기관 공유 제한 추진('24.下)
 - * '24.5.31일까지 소액연체(2천만원 이하) 전액상환시 연체이력정보 공유·활용 제한 ** 중진공 성실경영심층평가(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, 채무변제, 재기준비도 등) 통과자
- □ 일시적 어려움에도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신속하고 확실한 지원을 통해 정상기업화하고 성실경영자에 대한 재창업도 지원
 -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게 이자감면 등을 제공*하여 신속한 정상화 지원('24.4월)
 - * 은행권 '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('08년~)'의 지원대상에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'예상'되는 기업까지 한시적 포함 + 1년간 3%대 금리(조달금리 수준) 제공
 - "신복위-신보-은행권"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성실경영 후
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에 대한 재창업 지원을 강화*('24.上)
 - * 신복위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의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은행-신보간 협약보증(신규 재창업 보증) 제공

〈향후 계획〉

◇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하고 신속·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,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

1. 민생금융 지속 추진 및 보완

- □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금융 차질없이 추진
 - 은행권 이자환급 잔여분(0.14조원)은 4월부터 차질없이 환급
 -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1차 신청접수(3.18일~26일)가 완료되 었으며, 일선 창구직원 교육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집행 예정
 - * 1차 신청분은 3.29~4.5일중 환급 예정이며 이후 신청분은 2분기 이후 환급 예정
 - 추가적으로 은행권 0.6조원 지원 → 서금원·신보 출연(약 2,400억원)
 및 소상공인 경비지원*(약 1,900억원) 등에 활용(4월부터 순차적 시행)
 - * 이자·수수료 등 캐시백, 전기료·통신비, 보증료, 대출원리금 경감 등
- □ 컨설팅 이수자 금리할인(은행-소진공 협업, '24.5월),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 플랫폼 개설('24년말) 등 금리경감 뒷받침 노력도 지속

2. 신속 집행 및 홍보 강화

- □ **정책자금 프로그램**을 제때에 이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프로그램별로 **최대한 조속히 준비**하여 **출시**
 - 향후, 관계부처 합동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·보완방안 마련
- □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 정책고객들이 정책을 정확히 알고 **활용**할 수 있도록 언론·온라인·현장 등 다양한 방식*으로 안내
 - * 간담회·토론회, 지역별 현장 설명회, 유튜브 쇼츠 영상, 브로셔·리플릿 등

III. FF 사업장 · 건설사 금융지원

〈주요 방안〉

◇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[●]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^②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

1. FF사업장 금융지원 강화(신규·추가지원)

- □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PF 관련 보증강화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
 - HUG·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*(25→30조원)하고,
 심사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을 완화*(HUG, 1년 한시)
 - * (HUG) 15 → 17조원 (+2조원), (주금공) 10 → 13조원 (+3조원)
 - **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 미요구
- ②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非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PF보증(4조원, 건설공제조합)을 연내 도입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
- ❸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「PF 정상화 펀드」에서 추가로 신규자금* 대출 허용 (캠코펀드 조성액 1.1조원의 40% 이내)
 - * (기존) PF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목적 자금집행만 허용, 브릿지론 대상 \rightarrow (변경) PF채권 할인매입 없이 추가 신규지금 대출 가능, 본PF 사업장에도 집행 허용

2.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

□ 높은 공사원가(자재비·인건비), 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·건설사 등에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부담을 경감

- 이 기 마련한 시장안정프로그램('85조원+α') 중 약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*을 적극 집행하여 유동성 지속 공급
 - * PF-ABCP 매입 2.8조원, 건설사대출·보증 4.2조원, P-CBO 건설사 추가편입 1조원 등
- 부동산PF 대출 시 이자, 각종 수수료* 등의 부과실태를 면밀히 점검(금감원)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
 - * (예시) 취급수수료, 자문수수료, 주선수수료, 만기연장수수료 등

〈향후 계획〉

◇ PF지원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개선·집행하고, PF사업장 등의 어려움도 상시 파악하여 제도개선 등 애로해소 조치 마련 지속

1. PF 금융지원 신속 집행

- □ 지원방안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실적을 상시 점검
 - **시장안정프로그램**, **PF사업자보증** 등 旣 가동중인 프로그램은 지원강화 조치를 **즉시 시행**
 - 지원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집행이 부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집행제고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
 - 비주택보증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조치*도 조속히 추진
 - * 비주택보증을 위한 공제조합 근거법령 개정 등

2. 현장애로 지속 발굴

- □ 건설업계·금융업권·시장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·토론회 등을 통해 부동산PF 금융지원에 필요한 개선방향 지속 모색
 - **현장의견·애로사항**은 **부동산 관계부처**(기재부·국토부·금융위 등)에 상시 공유하고 제도개선·지원강화 등 필요조치 적극 검토

주요 정책과제 현황

| 주요 | 정책 | 과제 |
|----|----|----|
|----|----|----|

소관부서

담당자

| I. 중소기업·소상공인 금융지원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▶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 |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| 김기태사무관 (O2-21OO-2861) | | |
| ▶ 기술보증 공급규모 상향 |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| 김정훈 사무관 (044-204-7703) | | |
| ▶ 지역신보 소상공인 신규 보증 추가 공급 |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| 공인식 사무관 (044-204-7528 | | |
| ▶ 취약 소상공인 대상 소진공 정책자금 확대 |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| 박현 사무관 (O44-2O4-7616) | | |
| ▶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|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| 김경호사무관 (O2-21OO-2953) 이정민사무관 (O2-21OO-2993) | | |
| ▶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|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| 허 성 사무관 (02-2100-2862) | | |
| ▶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|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| 문성배사무관 (02-2100-2936) | | |
| ▶ 은행권 채무조정프로그램 확대 | 금융감독원 | 하도훈팀장 (O2−3145−839O) | | |
| ▶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용사면 |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| 권진응사무관 (02-2100-2625) | | |
| ▶성실경영 재창업자 불이익정보 공유 제한 |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| 권진응사무관 (02-2100-2625) | | |
| ▶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대상 확대 (일시적 유동성부족 중소기업) |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| 안기빈사무관 (02-2100-2864) | | |
| ▶ 실패경험 기업인에 대한 재창업 지원 강화 |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| 허 성 사무관 (O2-21OO-2862) | | |
| ▶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 플랫폼 개설 | 금융감독원 | 하도훈팀장 (O2-3145-8390) | | |
| ▶ 컨설팅 이수자 금리할인 | 금융감독원 | 하도훈팀장 (O2-3145-8390) | | |
| Ⅱ. PF 사업장·건설사 금융지원 | | | | |
| , DEH T 7 0 0 0 0 7 0 0 7 * 1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|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| 최준녕사무관 (O44-2O1-3338) | | |
| ▶ PF보증 규모 25→30조원으로 확대(HUG, HF) |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| 이재용사무관 (O2-2100-2832) | | |
| ▶ 비주택 PF보증 4조원 연내 도입(건설공제조합) |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| 김효석사무관 (O44-2O1-4597) | | |
| ▶ PF 정상화펀드 지원대상에 정상사업장 포함 |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| 이재용사무관 (O2-2100-2832) | | |
| ▶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장·건설사 지원 |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| 이재용사무관 (O2-2100-2832) | | |
| ▶ 과도한 수수료 등 점검 및 시정 유도 |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| 이재용사무관 (02-2100-2832) | | |